



제31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
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17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조공선

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 추진부서가 변경되어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고,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전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예산 전출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(안 제6조제3항)
 - 제5조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

4. 참고사항

가. 부서협의결과

- 비용추계 : 미첨부
- 성별영향평가 : 체크리스트 제출로 평가절차 종료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나. 입법예고 결과

- 입법예고 기간 : 2026. 2. 26. ~ 2026. 3. 18. / 20일간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다. 관계법령 : 붙임1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건축비, 설계비, 감리비 등 부대경비를 필요한 경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,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한편,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은 기금이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되는 특성상,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.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적인 전출 근거를 두는 입법 방향 자체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☑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자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☑ 「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18p.

※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특성 상,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함에 유의